##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이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3529 발의연월일: 2021. 11. 25.

발 의 자:임이자・구자근・추경호

박대수 · 김성원 · 권영세

조명희 · 김형동 · 김태흠

권명호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

현행법은 국립공원 등의 자연생태계, 자연·문화 경관 및 지형·지 질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·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 하여 개정되어 왔으나 국내 생물종의 43.8%, 멸종위기종의 65%가 서 식하고 있는 국립공원 내에서의 야생동물 질병관리와 구조·치료 사 업 등에 관한 법적 근거 규정 자체가 없는 실정으로 국가 핵심보호지 역인 국립공원 내에서의 야생동물 유래 질병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· 관리 방향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음.

이에 현행법에 국립공원 내에서의 야생동물 질병관리 및 구조·치료에 관한 근거를 신설·명시함으로써 법적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하는 것임.

## 주요내용

공단의 사업에 있어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 질병관리 및 구조·치료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이에 수반되는 사업에 국가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제시함(안 제9조제13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립공원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, 같은 조 제14호(종전의 제13호) 중 "제 12호"를 "제13호"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3.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 질병 관리 및 구조ㆍ치료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사업) 공단은 다음 각 호의	제9조(사업)
사업을 한다.	
1. ~ 12. (생 략)	1. ~ 12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13.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 질병
	<u>관리 및 구조·치료</u>
<u>13</u> . 제1호부터 <u>제12호</u> 까지의 사	<u>14</u> . 제1호부터 <u>제13호</u> 까지의
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	
로 정하는 사항	